

## 1. 개정 이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지하층 등 의 공간을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재해구호법(법률 제20163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신설됨에 따라 이에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협회의 기본재산의 처분(안 제17조)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신청 서식(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함

### 나.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 마련(안 제1조의2제2항, 안 제2조의1)

구호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 중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도록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163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별표 2 제1호나목)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및 일정 기간 업무정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일과 부과처분 차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영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협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본재산 취득·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 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협회는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즉시 정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의 종류, 규모, 가액,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재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취득·처분 허가 신청서

(앞쪽)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허가일  |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br>(대표자) | 법인명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처분재산의<br>표시  | 종류  | 규모                                                 | 평가가액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종류         |     | [ ] 취득 [ ] 매매 [ ] 증여 [ ] 교환 [ ] 임대 [ ] 담보제공 [ ] 기타 |      |          |
| 취득·처분사유 및 용도 |     |                                                    |      |          |
| 취득·처분방법      |     |                                                    |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                                                    |      |          |

「재해구호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국재해구호협회장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
|----------------------|--------------------------------------------------------------------------------------------------------------------------------------------------------------------------------------------|---------------|
| 보고자<br>(대표자)<br>제출서류 | 1.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br>2.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br>3.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수수료<br><br>없음 |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생략)<br>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영 제2조제1항제1호-----<br>-----.                                         |
|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br>② ~ ④ (생략)<br><u>&lt;신 설&gt;</u> |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①-----<br>-----<br>-----<br>----- 법 제4조제1항제3호-----<br>-----<br>-----<br>-----<br>-----<br>-----<br>-----<br>-----<br>-----. |
|                                                                                                                                                                                                                                                                                        | ② ~ ④ (현행과 같음)<br><u>제17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u>                                                                                                 |

① 협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본재산 취득·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 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  
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  
의2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협회는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즉시 정관에 이를 반  
영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의 종  
류, 규모, 가액, 소재지 등이 포  
함된 기본재산 목록을 관리하여  
야 한다.